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66
----------	-------

발의연월일 : 2025. 7. 28.

발 의 자 : 최민희 · 김우영 · 김 현
김현정 · 박민규 · 이훈기
채현일 · 최혁진 · 허성무
황정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한국형 소버린 인공지능 개발'을 국가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인공지능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공공부문이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초기 수요자로서 시장 형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초기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는 성과의 불확실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실패 가능성이 존재함.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 면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구매나 용역 발주를 기피할 우려가 있음. 이는 공공수요 창출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

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지원”을 “시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
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제3
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
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
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
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
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인
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
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u><신설></u> ① (생략) <u><신설></u> <u><신설></u>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시책 등) ①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u>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u>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계</u>

② <u>제1항에</u>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u> ⑤ <u>제2항에</u>----- -----.
---	--